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5221485 판결 [주식매매대금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6. 21 선고 2023나2019868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4. 20 선고 2022가단5221485 판결

전문

원고(선정당사자)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김상연, 박상순, 김성율, 윤석준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안

담당변호사 정필재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황영준

변론 종결2023. 3. 23.

판결 선고2023. 4. 20.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29,459,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A 주식회사(이하 '원고'라 한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된 금융투자업자로서 2017. 12. 15.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인 'C(이하 '이 사건 투자조합'이라 한다)'를 설립하였는데, 이 사건 조합은 원고를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원고 외 나머지 선정자 19명을 유한책임사원으로 한다. 조합규약 24조 1항에서 원고는 이 사건 투자조합의 조합재산 관리·운영 등 업무를 수행하고, 조합의 재판상 또는 재판 외 모든 행위에 대하여 조합을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였고, 24조 3항에서 조합이 재판상 행위를 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을 민사소송법 53조의 선정당사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나. 이 사건 투자조합은 2018. 7. 2.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위 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회사가 기명식 보통주 20만 주를 1주당 2500원에 발행하고, 이 사건 투자조합은 신주대금 5억 원으로 위 발행주식을 인수하는 내용이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2020. 11. 23.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이자 주주의 지위에 있었다.

다. 이 사건 투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 이 사건 투자계약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다.

라. 피고는 2020. 8.경 이 사건 투자계약 15조를 위반하여 원고 또는 이 사건 투자조합의 동의 없이

자신이 보유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중 1,062,000주를 증권회사 등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그러한 사실을 2020. 11. 3. 사후적으로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1. 11. 피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투자계약 15조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과 17조에 따라 이 사건 투자조합이 투자한 주식 전부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0. 12. 1. 이 사건 투자조합과 사이에, 자신의 주식처분행위가 투자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에 관하여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은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바.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120,000주에 관한 주식매매대금은 이를 지급하였으나 80,000주(8만 주에 관하여 2021. 12. 31.까지 2억 원에 연 복리 4%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하기로 함)에 관한 주식매매대금은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위 8만 주에 관하여 이 사건 합의서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이 229,459,9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22%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29,459,928원 및 이에 대한 약정지연손해금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지급할 주식매수대금 $= (200,000,000 + (200,000,000 \times 1) \times 2) \times 1.043 =$
229,459,928(소수점 이하 버림)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이 사건 투자계약 17조에서 정한 피고의 책임은 피고가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유지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투자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은 이 사건 회사에게만 있으며, 피고는 연채채무자가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가 주식을 매수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피고가 이를 매수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48265 판결 참조), 이 사건 합의서는 처분문서로서 그 문언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도 아니며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궁할 수 있는 반증이 제출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따른 책임이 있다. 그런데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내용은 이 사건 합의서의 문언에 나타난 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책임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식은 피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처분하였으므로 회사는 책임이 없고 오로지 피고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피고를 기망하였고, 또한 피고에게 이 사건 투자계약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으로서 책임을 강요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는 이와 같은 원고의 사기나 강박에 기하여 한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였고 그 위반을 문언으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이 사건 회사에 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로서 신청하지 않은 것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투자계약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약정을 하고 위 약정을 위반하자 이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에서 정한 의무 중 일부를 이행하였으며,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책임을 전제로 하거나 회사가 책임을 지지 못할 경우에 피고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회사를 상대로 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와 같은 처분문서에 따른 청구가 권리남용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9,459,9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염우영

별지

1) 2018년 7월 2.일

2) 초일불산입 말일산입의 한편넣기 방식으로 일할계산